보험

판매개시일 : 2017. 2. 15

삼성생명 내리사랑연금보험 B1.4(무배당)

2017년 2월 15일

※ 적립형 연간납입한도 삭제반영

나와 내 아이의
미래까지
☑ **풍요롭게**

보험사 삼성생명 SAMSUNG

판매사 KEB 하나은행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 * 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판매자(모집인)에게 구두상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기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 2회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생존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중에 한하여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당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보험차익비과세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해당 상품은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별도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삼성생명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samsunglife.com(삼성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형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약관을 참고바라며 이혼시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콜센터(1588-3115)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BA 제 17-23호, 2017-02-08)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KEB하나은행(2003091001)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생명 콜센터 : 1588-3115

삼성생명 내리사랑연금보험 B1.4(무배당)

※ 본 상품은 일반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이어 연금수령이 가능한

내리사랑연금보험으로 사랑을 이어 가세요!

후수익자 지정이 가능한

1+1 연금플랜

※ 본 예시는 주피보험자가 연금선(先)수익자이고, 종피보험자가 연금후(後)수익자인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 세대를 이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 가입시점에 연금수익자 2명을 지정하여 (조)부모와 (손)자녀가 세대를 이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연금설계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 종신연금(플러스)형의 보증지급횟수 이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연금액 수준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액의 20, 50, 70, 100% 중 선택 가능)

· 종신연금(플러스)형의 보증지급횟수 이내 또는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연금지급기간 중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일시중지 한 후 필요한 경우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적립액의 일부로 내리사랑자금을 선택하여 지급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100세장수시대에 초장기 연금수령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고 85세까지 연금지급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종 적립형)

· 종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전이라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만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연한 자금운용으로 다양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자금의 맞춤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형 限/ 3년납 신청불가)

· 필요시 연금계약적립액의 중도인출 및 연간납입한도 제한없이 여유자금의 추가납입(적립형 限)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최대 2,000원 限)
단, 매년(보험연도 기준) 최초 4회까지의 인출시 수수료 면제

※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시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되므로 보험계약대출과 반드시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연금수령방법 선택**으로 상황에 맞는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01 종신연금(플러스)형

보증지급횟수 이내에는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보증지급횟수 이후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종신토록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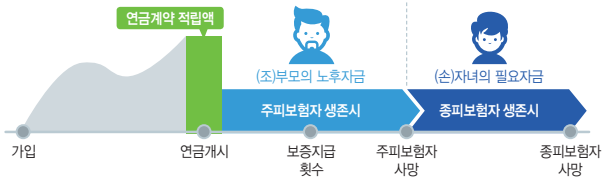

02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연금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시, 종피보험자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을 수령(또는 일시수령)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공시이율(변동금리)로 적립 후 종피보험자의 연금을 재(再)설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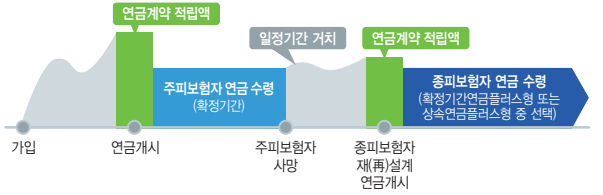

03 상속연금플러스형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계약적립액의 이자상당액을 수령하고, 주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연금계약적립액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공시이율(변동금리)로 적립후 종피보험자의 연금을 재(再)설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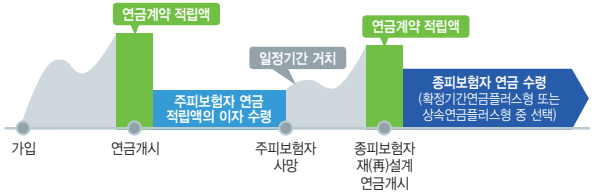

가입나이

1) 주피보험자 · 1종(적립형) : ① 10년납 미만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세
② 10년납 이상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납입기간+3)세)
· 2종(거치형)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7)세

※ 2종(거치형)의 경우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을 선택하는 경우 0세 ~ (주피보험자 연금지급개시나이 – 10세)

2) 종피보험자 : 0세 이상

납입기간

· 1종(적립형) : 3, 5, 7, 10~20년, (연금지급개시나이–3)세납
· 2종(거치형) : 일시납

※ 단, (연금지급개시나이–3)세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납입기간 단축가능[10년납 미만으로의 단축은 불가, 10년 초과납은 10년 이상 연단위 기간으로 단축가능(최대 20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 연금지급개시나이는 주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된 경우 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함

주피보험자 기준 · 1종(적립형) : 45 ~ 85세 · 2종(거치형) : 45 ~ 80세

종피보험자 기준 · 1종(적립형) – 10년납 미만 : 종피가입나이 + 10년 ~ 85세
– 10년납 이상 : 종피가입나이 + (납입기간 + 3)년 ~ 85세
· 2종(거치형) : 종피가입나이 + 7년 ~ 80세

※ 단,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종피보험자의 나이는 만15세 이상이어야 함

가입한도(기본보험료 기준)

1종 적립형 : 1구좌(월기본보험료 ~ 100만원) 기준

※ 아래 가입나이는 주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함
※ 주피보험자 가입나이는 '85– 보험료 납입기간 – 3'세를 초과할 수 없음

3년납	5년납	7년납
0세 ~ 50세 : 50 ~ 100만원	0세 ~ 30세 : 10 ~ 100만원	0세 ~ 35세 : 10 ~ 100만원
51세 ~ 60세 : 60 ~ 100만원	31세 ~ 50세 : 20 ~ 100만원	36세 ~ 55세 : 20 ~ 100만원
61세 ~ 65세 : 70 ~ 100만원	51세 ~ 60세 : 30 ~ 100만원	56세 ~ 65세 : 30 ~ 100만원
66세 ~ 70세 : 80 ~ 100만원	61세 ~ 65세 : 50 ~ 100만원	66세 ~ 70세 : 50 ~ 100만원
71세 ~ 73세 : 90 ~ 100만원	66세 ~ 70세 : 70 ~ 100만원	71세 ~ 73세 : 70 ~ 100만원
74세 ~ 75세 : 100만원	71세 ~ 75세 : 90 ~ 100만원	74세 ~ 75세 : 90 ~ 100만원

10년납 이상 – 14년납 이하	15년납 이상 – 20년납 이하
0세 ~ 50세 : 10 ~ 100만원	0세 ~ 55세 : 10 ~ 100만원
51세 ~ 60세 : 20 ~ 100만원	56세 ~ 65세 : 20 ~ 100만원
61세 ~ 63세 : 30 ~ 100만원	66세 ~ 67세 : 30 ~ 100만원
64세 ~ 65세 : 50 ~ 100만원	
66세 ~ 67세 : 70 ~ 100만원	
68세 ~ 72세 : 90 ~ 100만원	

2종 거치형 : 기본보험료 1,600만원 이상

연금수익자 지정

계약자는 가입시점에 연금선(先)수익자, 연금후(後)수익자 지정 필요

– 연금선(先)수익자 : 연금지급개시시 우선적으로 연금수령권 가짐
– 연금후(後)수익자 : 연금개시후 연금선(先)수익자가 사망한 이후에 연금수령권을 가짐
– 연금선(先)수익자는 자신이 사망한 경우 연금수령권이 연금후(後)수익자에게 있음을 연금지급개시일 전까지 서면 동의 필요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연금선(先)수익자 또는 연금후(後)수익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까지 연금선(先)수익자 또는 연금후(後)수익자를 다시 지정 필요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선(先)수익자 또는 연금후(後)수익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금선(先)수익자 또는 연금후(後)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없음

※ 본 상품은 일반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 및 선납

·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3세」 연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내에서 보험료 추가납입 가능(1회 만원 이상, 만원단위, 승인된 정상계약 限)

① 적립형 · **1회 납입한도 :** 「이미 납입한 월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합계 X 2」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총 납입한도 :** 「월기본보험료 X 12 X 납입기간」의 2배 이내

② 거치형 · **연간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이내 · **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

※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단, 거치형의 경우 연간추가납입한도 內)만큼 추가로 납입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

· 적립형에 한하여 선납가능

5년납 이상 :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당월분 제외) / 3년납 : 11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당월분 제외)

※ 선납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없고 선납시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중도인출

·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연 12회, 1회당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에서 인출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천원단위)

·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적립액은 일정수준 유지 필요
– **적립형 : 1구좌당 200만원 이상 – 거치형 : 기본보험료의 30% 이상**

· 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최대 2,000원 限)
※ 단, 매년(보험연도 기준) 최초 4회까지의 인출시 수수료면제

· 10년 이내의 인출액 총 한도(인출수수료 포함)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이내로 제한
※ 중도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 지급시에는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의 예상액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적립형 限)

· 1회 신청당 최대 12개월 限, 최대 3회까지 가능
–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은 각각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4년, 5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합니다. (3년납 신청불가)
※단, 잔여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시 납입기간이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기되므로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신청시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 과다 등에 따라 계약 유지를 위한 최소보험료의 공제 불가시에는 납입일시중지
기간이 종료되며, 이 경우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합니다.
※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합니다.

조기연금수령제도 (적립형 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단축하고자 하는 연금개시년도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시 최소유지기간 以內로 연금지급개시 나이 단축 가능.
단, 이 경우 신청일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에 반드시 연금개시

① 가입후 3년이상 경과계약만 신청가능 ② 보험료 납입완료
③ 신청일이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적립액이
「이미납입한보험료(연금계약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 초과

※ 단, ③의 경우 신청일 이후 최저보증이율이 지속될 것을 가정했을 때 100%를 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으로 연금지급개시 신청시 가입후 경과기간이 9년 이상

고액계약 보험료할인제도 (적립형 限)

기본보험료 月35만원 초과 납입시 가입시점에 보험계약자가
「고액할인」과 「고액적립」 중 할인방법 선택 가능

– 고액할인 :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에서 할인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
– 고액적립 : 보험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할인금액만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
– 고액할인금액 또는 고액적립금액

3년납	35만원 <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 – 35만원) × 0.5%
5년납 이상	35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 (기본보험료 – 35만원) × 1.5%
	100만원 < 기본보험료 ≤ 200만원	: 9,750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 2.0%
	200만원 < 기본보험료 ≤ 300만원	: 29,750원 + (기본보험료 – 200만원) × 3.0%
	300만원 < 기본보험료	: 59,750원 + (기본보험료 – 300만원) × 2.0%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

연금개시이후 일정기간 동안 연금수령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수령 일시중지 종료 신청시 계속하여 연금수령 가능
(연금수익자가 일시중지 신청가능, 최대 3회 限)

– 일시중지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일시중지의 종료를
신청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年계약해당일부터 「보증지급횟수 – 1」년까지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 1」년까지) 지급
※ 종신연금(플러스)형 또는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연금수령 일시중지 신청시점에서 계약자와 연금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장기유지보너스 (적립형 限, 3년납 미적용)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제외)의 합계 X 1.0%」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적립액에 가산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계약일로부터 9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최종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사망시 지급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망시 지급액」이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금액 제외)」중 큰 금액입니다.

잔여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제도 (적립형 限)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경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
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여보험료의 전액 납입 종료를 신청가능

· 신청불가사유 :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1회 이상 신청한 경우
②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제도를 신청후 취소하거나 잔여 보험료 전액납입STOP(종료)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미만인 경우
④ 납입STOP(종료) 신청시 해지환급금이 회사에서 정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 잔여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신청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최소적립액(1구좌당 200만원 이상)"이상이어야 함

※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 기간 중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등을 공제합니다.
※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과다 등에 따라 계약유지를 위한 최소금액 공제 불가시에는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됩니다.
※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을 신청시 이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불가합니다.
단,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 STOP(종료)을 신청한 후 3년 이내에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 STOP(종료)제도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 STOP(종료)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됩니다.
※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 신청취소 또는 종료된 이후의 최초 보험료 납입기일은 신청취소 또는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로 연기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기일이
연기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또한 연기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 신청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STOP(종료)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본 상품은 일반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예시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장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예시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3.0%(2017년 기준)'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아래 1)에 예시된 연복리 2.55%는 평균공시이율 3.0%(2017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55%(2017년 2월 기준)'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아래 2)에 예시된 연복리 2.55%는 2017년 2월 기준 공시이율입니다.

종피부가형 (적립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종피보험자 남자 5세, 월납보험료 100만원, 5년납, 55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종피부가형

연금연액 기준 (단위 : 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5% 유지시 1)	연복리 2.55% 유지시 2)
종신연금 플러스형	10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991,480	2,248,890	2,248,890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991,480	2,248,890	2,248,890
	26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991,440	2,248,770	2,248,770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991,440	2,248,770	2,248,770
	60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983,990	2,237,780	2,237,780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983,990	2,237,780	2,237,780
확정기간 연금플러스형	10년형		6,335,120	8,534,200	8,534,200
	20년형		3,246,530	4,801,510	4,801,510
	30년형		2,217,860	3,583,170	3,583,170
상속연금 플러스형	주피보험자 생존시		308,210	1,899,730	1,899,730
	해지 또는 주피보험자 사망시 일시지급금		62,074,870	75,020,830	75,020,830

※ 상기 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에 지급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에 따라 연금액이 변경됩니다.
※ 상기 예시된 종신연금플러스형의 보증지급횟수는 ① 최소보증지급횟수[10회], ② 기대여명[단, 주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10]회, ③ 최대보증지급횟수[「115(단, 가입시 종피보험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 − 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회]이며,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의 연금액」은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액에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단, 보증지급횟수 직후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주피보험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예시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피부가형 (거치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종피보험자 남자 5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55세 연금지급개시, 종피부가형

연금연액 기준 (단위 : 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5% 유지시 1)	연복리 2.55% 유지시 2)
종신연금 플러스형	10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666,550	3,919,820	3,919,820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666,550	3,919,820	3,919,820
	26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666,480	3,919,610	3,919,610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666,480	3,919,610	3,919,610
	60회 보증	주피보험자 생존시	1,653,970	3,900,450	3,900,450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	1,653,970	3,900,450	3,900,450
확정기간 연금플러스형	10년형		10,648,500	14,875,150	14,875,150
	20년형		5,457,000	8,369,060	8,369,060
	30년형		3,727,930	6,245,480	6,245,480
상속연금 플러스형	주피보험자 생존시		518,070	3,311,240	3,311,240
	해지 또는 주피보험자 사망시 일시지급금		104,339,650	130,761,510	130,761,510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5, 10, 15, 20 또는 30년]동안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 10, 15, 20 또는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연금수익자는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본 상품은 일반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예시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장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예시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3.0%(2017년 기준)'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종피미부가형 (적립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100만원, 5년납, 55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종피미부가형

연금연액 기준 (단위 : 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5% 유지시 1)	연복리 2.55% 유지시 2)
종신연금 플러스형	10회 보증	1,802,550	3,157,940	3,157,940
	26회 보증	1,756,470	3,080,430	3,080,430
	45회 보증	1,500,770	2,764,590	2,764,590
확정기간 연금플러스형	10년형	6,335,280	8,534,400	8,534,400
	20년형	3,246,610	4,801,620	4,801,620
	30년형	2,217,910	3,583,250	3,583,250
상속연금 플러스형	주피보험자 생존시	308,220	1,899,770	1,899,770
	해지 또는 주피보험자 사망시 일시지급금	62,076,410	75,022,520	75,022,520

※ 상기 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에 지급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에 따라 연금액이 변경됩니다.
※ 상기 예시된 종신연금플러스형의 보증지급횟수는 ① 최소보증지급횟수[10회], ② 기대여명[단, 주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10]회, ③ 최대보증지급횟수[「115(단, 가입시 종피보험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 – 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회]이며, 「보증지급 후 종피보험자만 생존시의 연금액」은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액에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단, 보증지급횟수 직후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주피보험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예시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아래 1)에 예시된 연복리 2.55%는 평균공시이율 3.0%(2017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55%(2017년 2월 기준)'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아래 2)에 예시된 연복리 2.55%는 2017년 2월 기준 공시이율입니다.

종피미부가형 (거치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55세 연금지급개시, 종피미부가형

연금연액 기준 (단위 : 원)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5% 유지시 1)	연복리 2.55% 유지시 2)
종신연금 플러스형	10회 보증	3,029,880	5,504,340	5,504,340
	26회 보증	2,952,420	5,369,250	5,369,250
	45회 보증	2,522,620	4,818,740	4,818,740
확정기간 연금플러스형	10년형	10,648,860	14,875,590	14,875,590
	20년형	5,457,180	8,369,310	8,369,310
	30년형	3,728,050	6,245,660	6,245,660
상속연금 플러스형	주피보험자 생존시	518,080	3,311,330	3,311,330
	해지 또는 주피보험자 사망시 일시지급금	104,343,200	130,765,410	130,765,410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5, 10, 15, 20 또는 30년]동안에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 10, 15, 20 또는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연금수익자는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본 상품은 일반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아래 1)에 예시된 연복리 2.55%는 평균공시이율 3.0%(2017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55%(2017년 2월 기준)'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아래 2)에 예시된 연복리 2.55%는 2017년 2월 기준 공시이율입니다.

종피부가형 (적립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종피보험자 남자 5세, 월납보험료 100만원, 5년납,
55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종피부가형

(단위 : 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5% 유지시 1)		연복리 2.55% 유지시 2)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200	1,093	91.1	1,101	91.7	1,101	91.7
3년	3,600	3,419	94.9	3,488	96.9	3,488	96.9
5년	6,000	5,803	96.7	5,997	99.9	5,997	99.9
7년	6,000	5,905	98.4	6,292	104.8	6,292	104.8
10년	6,000	6,122	102.0	6,822	113.7	6,822	113.7
15년	6,000	6,238	103.9	7,693	128.2	7,693	128.2

종피미부가형 (적립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100만원, 5년납,
55세 연금지급개시, 고액적립반영, 종피미부가형

(단위 : 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5% 유지시 1)		연복리 2.55% 유지시 2)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200	1,093	91.1	1,101	91.7	1,101	91.7
3년	3,600	3,419	94.9	3,488	96.9	3,488	96.9
5년	6,000	5,803	96.7	5,997	99.9	5,997	99.9
7년	6,000	5,905	98.4	6,292	104.8	6,292	104.8
10년	6,000	6,122	102.0	6,823	113.7	6,823	113.7
15년	6,000	6,238	103.9	7,693	128.2	7,693	128.2

※ 예시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생존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보장 대상자가 변경되어 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미 납입함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경과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선택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 이미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로 나누어서 산출된
비율이며, 적립형의 경우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실납입보험료
(고액할인을 선택한 경우 고액할인이 반영되어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인
실환급률을 의미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피부가형 (거치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종피보험자 남자 5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55세 연금지급개시, 종피부가형

(단위 : 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5% 유지시 1)				연복리 2.55% 유지시 2)			
기간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1년	9,811	98.1	9,614	96.1	9,937	99.3	9,740	97.4	9,937	99.3	9,740	97.4
3년	9,932	99.3	9,800	98.0	10,323	103.2	10,191	101.9	10,323	103.2	10,191	101.9
5년	10,056	100.5	9,990	99.9	10,728	107.2	10,663	106.6	10,728	107.2	10,663	106.6
7년	10,132	101.3	10,132	101.3	11,155	111.5	11,155	111.5	11,155	111.5	11,155	111.5
10년	10,359	103.5	10,359	103.5	11,948	119.4	11,948	119.4	11,948	119.4	11,948	119.4
15년	10,486	104.8	10,486	104.8	13,409	134.0	13,409	134.0	13,409	134.0	13,409	134.0

종피미부가형 (거치형)

주피보험자 남자 4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55세 연금지급개시, 종피미부가형

(단위 : 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연복리 2.55% 유지시 1)				연복리 2.55% 유지시 2)			
기간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연금계약 적립액	적립률	해지 환급금	환급률
1년	9,811	98.1	9,614	96.1	9,937	99.3	9,740	97.4	9,937	99.3	9,740	97.4
3년	9,932	99.3	9,800	98.0	10,323	103.2	10,191	101.9	10,323	103.2	10,191	101.9
5년	10,056	100.5	9,990	99.9	10,729	107.2	10,663	106.6	10,729	107.2	10,663	106.6
7년	10,132	101.3	10,132	101.3	11,155	111.5	11,155	111.5	11,155	111.5	11,155	111.5
10년	10,359	103.5	10,359	103.5	11,948	119.4	11,948	119.4	11,948	119.4	11,948	119.4
15년	10,486	104.8	10,486	104.8	13,409	134.0	13,409	134.0	13,409	134.0	13,409	134.0

※ 연금계약적립액이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연금계약적립액에서 해지시 발생하는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입 후 7년 경과시점부터는 연금계약적립액과 동일합니다.**

직전 1년 공시이율 변동내역

경과월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6.10	'16.11	'16.12	'17.1	'17.2
공시이율	2.84%	2.80%	2.75%	2.72%	2.72%	2.67%	2.59%	2.53%	2.52%	2.48%	2.48%	2.58%	2.55%

※ 공시이율 변동(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에 따라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합니다.

※ 본 상품은 일반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 ·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종 적립형 (1구좌 기준)	2종 거치형
중증재해 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기본보험료 × 20% × 해당장해지급률

※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주피보험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 중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선택한 1명(단, 계약 체결시점에서 0세 이상)으로 합니다.
계약체결 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주피보험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단,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에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적립형(5년납 이상에 한함)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피보험자가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계약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계약해당일 또는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적립형의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함),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 비용을 차감하며, 잔여보험료전액 납입STOP(종료)기간 중에는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함),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를 공제합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으로 연금 지급

▼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의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액에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연금개시 신청시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여 선택 가능

(연금지급개시전에는 선택 및 변경 불가)

▼ 종신연금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피보험자 모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액에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내리사랑자금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 지급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3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내리사랑자금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 지급

▼ 상속연금플러스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적립액에 (1-내리사랑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연도 중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연금액으로 지급 [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내리사랑자금 지급기간 내에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내리사랑자금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 지급

※ 단, 약관 제20조의2 [개인형으로의 가입 및 전환]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에 개인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단,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에 한함) 중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고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개인형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세부 내용은 약관의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수익자는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한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불구하고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의 「일부기간선지급(연단위) 또는 일정비율선지급(10% 단위)」을 선택한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기간 선지급과 일정비율선지급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일정비율선지급을 여러번 선택할 경우 해당 선택비율의 합계를 최대 50%로 합니다.

※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피보험자 사망후 연금수령비율'이란 주피보험자의 사망 후 연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계약체결시점에 20%, 50%, 70%, 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연금지급개시시점에 변경 가능합니다.)

※ 내리사랑자금의 인출 신청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연금수익자가 할 수 있으며,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이란 내리사랑자금의 수령을 위해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 내리사랑자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와 연금수익자가 이미 인출한 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내리사랑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 내리사랑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이후 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상속연금플러스형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또는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여 종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연금을 재(再)설계하는 경우 연금지급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